

지식기반사회와 영재교육진흥법시행령 제정의 방향

이군현(과학기술원 교수)	함철훈(가톨릭대학교 교수)
김언주(충남대학교 교수)	김명환(KIM연구소 소장)
육근철(공주대학교 교수)	이상천(경남대학교 교수)
하종덕(재능대학 교수)	

I. 서론

미래학자들에 의하면, 21세기는 국민 개개인에게 축적된 지식이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시기라고 진단되어 왔다. 전통적 경제사회에서의 생산요소는 노동과 자본이었으나, 미래사회에는 여기에 “지식”이라는 생산요소가 가미될 것이다. 그러나 지식은 노동 및 자본과 대등한 요소라기보다 별개의 자원으로서 전통적 생산요소와는 차원이 다른 유일하게 중요한 자원이다. 예를 들면, 우리의 자동차 150만대 수출보다 창의적 아이디어로 제작한 스티븐 스피버그 감독의 영화 “쥬라기공원” 한 편이 훨씬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한다는 사실에서 창의적 지식의 중요성이 단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제 세계 각국은 21세기에 전개될 지식기반사회에 적응함에 있어서 정치·사회·경제·문화·교육 등 각 분야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의 구축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이와 같은 세계적 흐름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양적 성장 위주의 산업국가에서 질적 발전 위주의 지식기반국가로 전환하기 위하여 “창조적 지식기반국가”를 지향하는 것이 국정의 중심목표로 자리잡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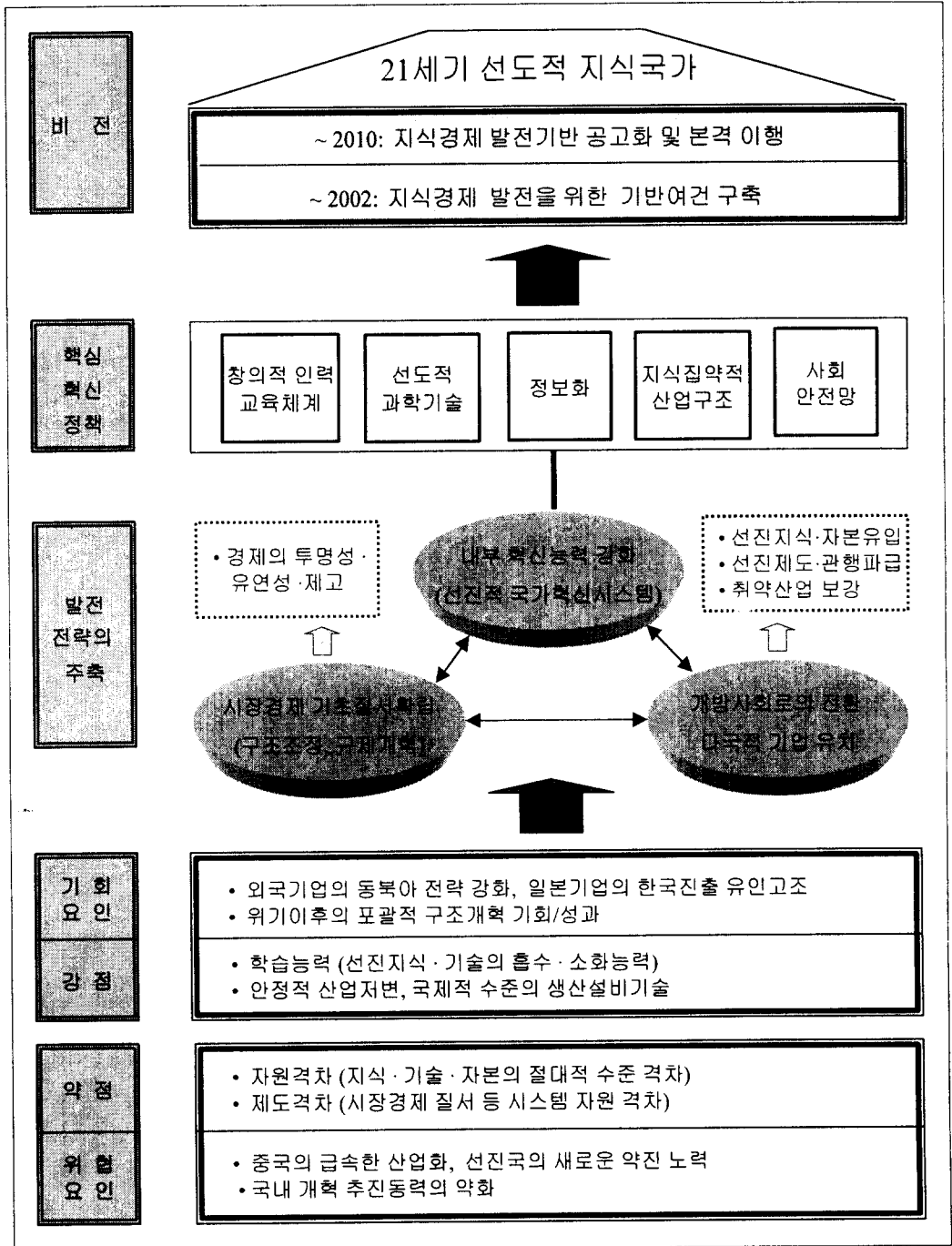
이와 관련하여 지식기반국가 창출의 중요한 축인 창의적 인력양성의 문제는 오늘날 최우선의 교육정책상의 과제이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21세기 국가경쟁력의 원천이 하드웨어적인 힘이 아니라, 소프트웨어적인 힘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창의적 인

력을 육성하는 것이야말로 지식기반사회에 대비하는 지름길이며, 이를 위한 시급한 정책과제는 창의적이고 우수한 영재를 육성하는 교육체제의 구축이다.

이러한 사회적 요청은 지난 3월 27일 한국개발연구원에서 개최된 「지식기반경제발전 3개년 추진전략」에 관한 정책토론회에서는 교육·인력개발부문과 관련하여 산업시대의 획일적인 생산인력 양산체계로는 지식기반사회가 요구하는 창조적이고 전문성을 구비한 인적자원의 개발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개별 경제주체가 시장수요에 따라 내재된 적성, 능력 등을 극대화하여 실현할 수 있는 창의적 인적개발 체제 구축이 필요하다라는 점이 지적되었다. 아울러 창의적이고 경쟁력 있는 교육체제로의 개편을 위하여 영재교육체제의 정비가 강조되었다.

다행히도 영재교육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영재교육진흥법”이 작년 12월 제208회 정기국회에서 제정됨으로서 우리나라는 미래사회의 주역인 영재 육성의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으나, 이 법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영재교육법시행령”의 제정작업이 시급한 실정이다.

<그림 1> 지식기반경제 발전방향과 구도



출처 : 한국개발연구원, 「지식기반경제발전 3개년 추진전략」에 관한 정책토론회자료(2000. 3. 27)

II. 영재교육 체계의 기본방향

영재교육체제가 현실적으로 실천 가능한 방안이 되기 위해서는 현재 중·고등학교의 무시험 입시전형의 교육제도는 유지하되, 수월성을 추구할 수 있도록 교육제도와 교육프로그램 등이 다양하게 마련되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고자 하는 영재교육체계의 기본방향은 초·중·고·대학이 연계된 교육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영재교육진흥법에 명시된 영재학교, 영재학급, 영재교육원, 영재교육연구원의 기능과 역할을 분명히 하여 고등교육 기관과 연계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제정의 구체적 방향과 내용은 III장, IV장에서 다루겠다.

1. 영재교육 관련 기관 운영 체계

1) 영재교육원, 영재학급 등 다양한 영재교육프로그램의 운영

영재교육은 크게 교육청 단위별로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영재학급, 대학 등에서 운영하는 영재교육원, 그리고 영재학교 등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특수한 재능을 발굴하기 위해서는 되도록 많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그 가능성을 타진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영재학급은 초등학교와 중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이며, 가능성 있는 영재들의 풀(pool)을 마련하는 장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가능하면 보다 많은 학생이 자신의 재능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영재학급에 지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시·도·군·구 단위의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영재교육프로그램은 보다 많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분야의 재능을 신장시킬 수 있는 영재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영재교육원의 설립과 소속은 해당 정부부처가 권장하도록 하고, 종류는 4개 분야, 그 수는 시도별로 1개 정도가 바람직할 것이다. 기존의 과기부 지원 대학부설 영재교육센터는 영재교육원으로 명칭을 전환하여 정책의 일관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고 소수의 초·중·고등영재학생을 지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과

학분야의 영재교육원은 기존의 15개 센터로 대체하고 과학영재분야 이외의 분야에 대해서 영재교육원을 개설하여야 할 것이다. 영재교육진흥법이 통과되었으므로 대학부설 과학영재교육센터는 명칭을 영재교육원으로 바뀌어야만 영재교육진흥법 제11조(이수 인정)에 의하여 학점인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대학부설 영재교육원(과학영재교육센터)에서 교육받는 학생은 전문적인 지도가 가능한 사사제도(mentorship)를 적극 도입하여야 한다. 또한 영재교육을 수업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육기간동안 연구한 산출물을 반드시 발표(전문학회지, 자체학술지, 전시회, 발표회 등)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어야 할 것이다.

2) 영재학교의 운영

전국을 권역별로 나누어 국립 영재학교(영재교육진흥법에 근거하여)를 설립 또는 지정하여 운영해야 할 것이다. 영재학교의 종류는 영재성이 뛰어난 학생들의 재능을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과학, 예술, 체육, 인문사회 등 4개 분야가 되어야 할 것이다. 단, 기존의 학교 중 영재를 교육하기에 적절한 여건을 갖춘 학교(예를 들어, 과학고)는 예산의 효율적 관점에서 영재학교로 전환하여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영재학교의 학급당 인원은 20명 이하로 되어야 할 것이고, 학년당 3~4학급 정도로 하고, 영재학교의 수는 설립주체가 국립이 된다면 기본적으로 시도별로 1개씩 정도는 있어야 하겠으나 지역적으로 인접하여 통폐합할 필요가 있는 곳도 있을 수 있을 것이다.

영재학교는 영재학급이나 영재교육원에서 선발되어 교육받은 학생은 물론 일반학교에서 우수한 학생도 입학이 허용되고 또한 다시 일반학교로 전학하는 것이 허용되어야 한다. 또한 영재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은 일반학생들에 대한 입시와는 별도의 평가전형의 틀을 개발하여 적용함으로써 대학진학과 잘 연계되어야 한다. 영재학교에서는 대학 수준까지 교육하고 이를 대학에서도 인정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 영재학교는 교육부 외에도 해당분야의 영재교육을 감당할 수 있는 정부부처 산하에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영재학교의 교원은 자질이나 처우에 있어서 교수 수준이 되어야 한다.

3) 영재교육연구원

(1) 관련법규의 문제

정부출연기관설립법을 개정하여 영재교육연구회를 신설하여 과학, 예술, 체육, 인문 사회 등 4개의 독립된 정부출연기관으로 설립한다.

영재교육연구회는 정부부처별 영재교육연구원의 설립에 법적 근거 역할을 하고 실제 설립 및 폐지는 각 정부부처별 중앙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영재교육연구원의 역할은 주로 영재연구, 영재교사 연수, 영재교육 정책 연구 등이 중심이 될 것이며, 영재교육기관(영재학교, 영재교육원, 영재학급)과 긴밀한 관계를 가질 것이다.

(2) 연구원의 분야 문제

과학영재교육연구원

예술영재교육연구원

체육영재교육연구원

인문사회영재교육연구원 등 4개 연구원 정도

(3) 연구원의 대학연계 및 소속부처의 문제

영재교육연구원의 소속 부처는 반드시 그 분야의 최고 수준의 대학과 연계하고, 그 대학과의 긴밀한 연계를 위하여 그 대학 소속의 정부 부처에 둔다.

예) 과학영재교육연구원의 경우, 과학기술부 산하에 두고, 독립된 운영을 하는 정부출연기관으로 설립하고 과기원(KAIST)의 과학영재교육연구소를 연구인력을 보강하여 확대한다.

4) 일반대학에서의 학·석·박사과정의 통합적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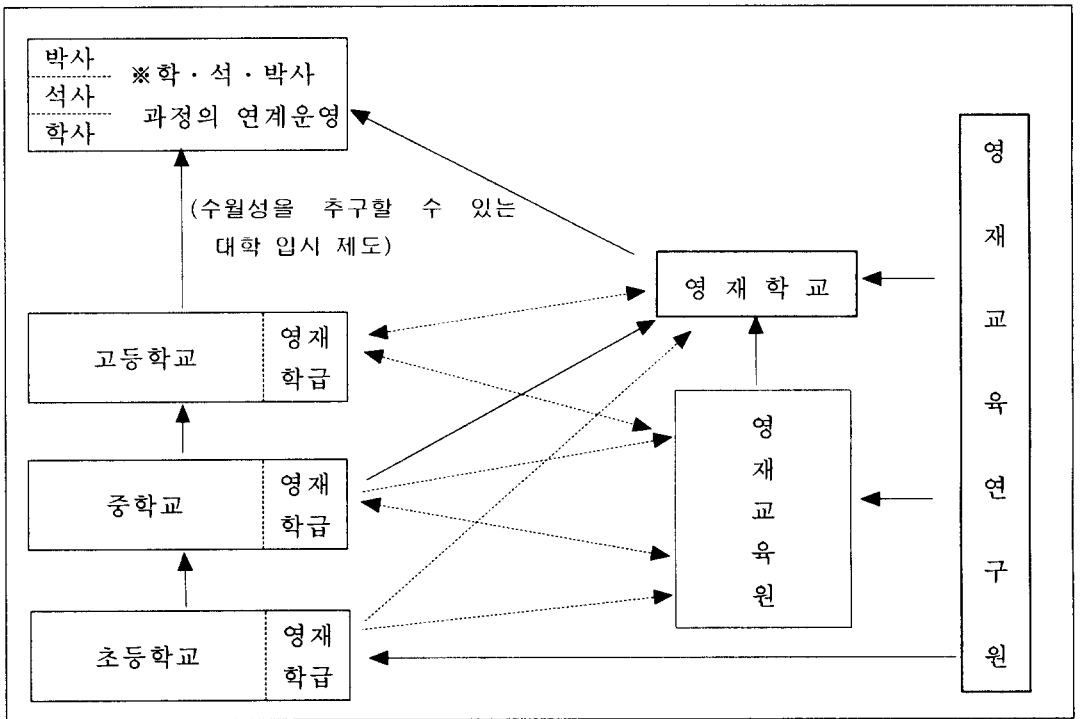
초·중·고등학교 수준에서 영재교육을 받고 대학에 입학한 학생들의 재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대학교육도 현재와는 다른 형태로 운영되어야 한다.

현재 대학교육에서는 기본적으로 학사과정, 석사과정, 박사과정의 운영이 분리되고 있다. 이 제도의 단점은 특출한 재능을 지닌 학생에게는 속진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현대사회에서는 획일적 학제에 너무 얽매이기보다는 자신의 재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교육제도가 중요

하다. 즉, 대학의 학사과정을 이수하면서 우수한 학생이라면 석·박사과정의 과목을 수강할 수 있게 허용되어야 한다. 이러한 제도는 개인의 재능을 극대화시킬 수 있으며 수월성 추구를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조치가 될 것이며, 그 전제로는 대학의 운영이 정부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지금까지의 논의한 영재교육체계를 개념적으로 도식화하면 <그림 2>와 같다.

<그림2> 영재교육체계도



2. 영재교육체계 변화에 따른 보완적 사항들

또한 이러한 교육제도가 구체적으로 실행되어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형태의 교육이 병행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1) 공통 수업시수 축소, 능력별 수업시수 증대

초·중·고의 수업일수는 모든 학생이 공통으로 참여하는 수업 시수는 줄이고 능력

별로 수업 받는 시수를 늘려야 한다. 실제로 영재학교나 대학부설 센터의 수는 극히 제한되어 있으므로 현재의 중·고등학교의 무시험·전형 틀을 유지하면서 보다 많은 학생이 수월성을 추구하려면 영재학급이나 영재교육원에 가서 능력별로 심화학습수업을 받는 시수를 상당히 늘려야 할 것이다.

2) 연구과제수행대회 활성화

계산위주의 대회보다 연구과제(research project) 수행대회, 개인경합대회보다는 팀워크에 의하여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대회를 육성해야 한다. 예를 들어, 과학 분야 같으면 미국 Intel에서 지원하는 대회(Intel Science Talent Search Program), 폴란드나 헝가리의 학생 연구/논문 경연대회 같은 유형의 창의적인 대회를 육성하여야 할 것이다. 문제를 단순히 계산하는 대회보다는 연구과제를 작성해 보는 대회가 교육의 수월성 추구에 중요하다. 영재학교나 영재학급, 영재교육원에서의 교육도 이러한 프로젝트를 수행해보는 대회와 상보적 관계가 바람직할 것이다.

3) 고등학교 과정에 AP과정 설치 운영

일반 고등학교 과정에서도 최상위권에 있는 학생을 위하여 AP(Advanced placement)과정을 설치 운영하여 보다 수준 높은 대학과정을 수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Ⅲ. 영재교육진흥법

1. 개 요

영재교육을 제도화하기 위한 입법방향은 그 동안 ① 특수교육진흥법의 개정으로 교육대상자 중에 영재 및 재능아를 포함시키는 방안, ② 교육부령에 의하여 특수목적고를 설치하는 방안, ③ 교육기본법에 영재 및 재능아의 교육에 관한 근거조항을 신설하고 이를 근거로 영재교육진흥법을 제정하는 3개의 방안이 검토되어 왔으나, 영

재교육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영재교육진흥법의 제정이 바람직하다는 교육계의 여론을 바탕으로 1998년 11월 19일 38명의 국회의원이 발의한 영재교육진흥법안이 제208회 정기국회에 상정되어 1999년 12월 28일 의결되었다. 이 법은 부칙에 따라 2002년 3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할 예정이다. 다만, 영재교육의 실시를 위하여 영재교육진흥법시행령 및 영재교육진흥법시행규칙의 제정이 요청된다.

2. 입법배경

위기에 처한 국가경제를 살리는 방안은 우수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교육제도의 완비에 있으며, 현재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교육제도로는 미래의 국경 없는 경쟁시대의 경제 전쟁에 대비하는 인력을 양성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영재교육진흥법은 우수한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영재육성을 할 수 있는 교육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이다.

3. 주요내용

1) 목 적 : 제1조 관련

영재교육진흥법은 교육기본법 제12조,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재능이 뛰어난 사람을 조기에 발굴하여 타고난 잠재력을 계발할 수 있도록 능력과 소질에 맞는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개인의 자아실현을 도모하고 국가·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 제2조 관련

이 법에서는 ① 영재, ② 영재교육, ③ 영재교육기관, ④ 영재학교, ⑤ 영재학급, ⑥ 영재교육원, ⑦ 영재교육연구원 등 7개 사항에 대한 용어가 정의되어 있다.

3) 국가의 임무 : 제3조 관련

국가는 영재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① 영재교육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② 영재

교육의 내용과 방법의 개선 및 보급, ③ 영재 판별 도구의 개발 및 보급, ④ 영재교육 담당교원의 임용과 연수, ⑤ 영재학교 및 영재학급의 설치·운영, ⑥ 영재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지원, ⑦ 기타 영재교육 진흥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4) 영재교육진흥위원회의 구성 : 제4조 관련

영재교육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에 중앙영재교육진흥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를, 시·도 교육청에 시·도 영재교육진흥위원회(이하 “시·도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중앙위원회 및 시·도위원회의 조직,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다.

5) 영재교육대상자의 선정 : 제5조 관련

고등학교 과정 이하의 각급 학교에 취학한 자 중에서 ① 일반지능, ② 특수학문적성, ③ 창의적 사고능력, ④ 예술적 재능, ⑤ 신체적 재능, ⑥ 기타 특별한 재능이 뛰어나거나 잠재력이 우수한 사람 중 영재판별기준에 의거 판별된 사람을 영재교육대상자로 선정한다.

영재교육대상자는 교육감이 시·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하되, 영재교육기관의 장에게 그 권한의 일부를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으며, 영재교육대상자의 판별·심사·선정의 기준 및 절차와 선정 통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다.

6) 영재학교·학급·교육원의 설치·운영 : 제6조 내지 제8조 관련

국가는 영재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고등학교 과정 이하의 각급 학교 중 일부학교를 지정하여 영재학교로 전환하거나 새로이 영재학교를 설립·운영할 수 있으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영재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고등학교 과정 이하의 각급 학교에 교과영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영재학급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시·도 교육청, 대학, 국공립 연구소, 정부출연기관 및 과학·기술, 예술, 체육 등과 관련 있는 공익법인은 영재교육원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7) 영재교육연구원 : 제15조 관련

국가는 영재교육 관련 연구·개발 및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영재교육연구원을 설치하거나 영재교육연구원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영재교육연구원은 ① 영재교육에 관한 이론적 기초연구, ② 영재교육 정책연구, ③ 영재판별에 관한 연구·개발, ④ 영재교육 방법 및 자료의 연구·개발, ⑤ 영재교육지원시스템 연구·개발, ⑥ 교원 연수자료의 연구·개발 및 연수 실시, ⑦ 기타 영재교육 관련 연구업무를 수행한다. 영재교육연구원의 조직·운영 및 경비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다.

<표 1> 영재교육진흥법의 개요

조 문	내 용	비 고
제 1 조	잠재력을 개발할 수 있는 교육 실시	목 적
제 2 조	7개 사항 정의 : 영재, 영재교육, 영재교육기관, 영재학교, 영재학급, 영재교육원, 영재교육연구원	정 의
제3조	제1항 국가의 강구시책 (제1호 내지 제7호)	국가의 임무
	제2항 국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 권고	
제4조	제1항 중앙위원회 및 시도위원회의 설치	영재교육진흥위원회
	제2항 영재교육진흥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중앙위원회의 기능대행기관을 대통령령에 위임	
제5조	제1항 영재교육분야 및 대상자의 선정	영 재 교육 대상 자의 선정
	제2항 영재교육대상자에 대한 심사	
	제3항 영재교육대상자의 선정기준 등을 대통령령에 위임	
제 6 조	국가의 영재학교로의 전환 및 신설운영	영 재 학 교 의 설립, 운영
제 7 조	국가 및 시·도 자치단체의 영재학급의 설치, 운영	영 재 학 급 의 설립, 운영
제 8 조	시·도 교육청, 대학, 국공립연구소, 정부출연기관 및 공익법인 등의 영재교육원 설치, 운영	영 재 교 육 원 의 설치, 운영
제 9 조	영재학교, 영재학급, 영재교육원의 설립기준 등을 대통령령에 위임	영 재 교 육 기 관 의 설립기준 등
제10조	제1항 영재교육대상자의 영재학교 등 지정배치 요구	영재학교 및 영재학급의 지정·배치
	제2항 시·도교육감의 배치의무	
	제3항 학교장의 배치거부에 관한 특별사유 대통령령에 위임	
	제4항 영재학교 등의 심사절차 등을 대통령령에 위임	
제11조	제1항 영재교육이수에 대한 정규교육과정의 이수 인정	이수인정
	제2항 이수인정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	

제12조	제1항	영재교육기관의 교원임용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	교원의 임용 및 자질향상
	제2항	영재교육담당교원에 대한 정기적 교육 및 연수 실시	
	제3항	교육 및 연수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	
제13조	제1항	영재교육내용은 학교장이 따로 정함	교육내용 및 교과용도서
	제2항	영재교육교과용 도서에 필요한 사항 대통령령에 위임	
제 14 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영재학급 등에 대한 재정지원	재정지원
제15조	제1항	국가의 영재교육연구원의 설치 또는 지정	영재교육연구원
	제2항	영재교육연구원의 업무(제1호 내지 제7호)	
	제3항	영재교육연구원의 조직 등을 대통령령에 위임	

IV. 영재교육진흥법시행령의 제정을 위한 주요과제

1. 작업경과

영재교육진흥법은 그 시행을 위하여 상당한 준비기간이 필요하다고 예상되었기 때문에 부칙에서 시행기일을 2002년 3월 1일로 규정한 바 있다. 한편, 영재교육진흥법에서는 동 법의 시행에 필요한 주요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함으로써 영재교육법시행령의 제정작업은 서두르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사실 영재교육법시행령의 제정작업은 교육부의 소관사항이지만, 당초 영재교육진흥법이 의원입법으로 제정되었고, 입법과정에서도 영재학회의 의견이 상당수 반영되었던 점을 고려하여 교육부의 영재교육법시행령의 제정작업에 앞서 영재교육관련단체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영재교육법시행령(안) 제정의 기본방향을 정리해보기로 하였으며, 그 동안의 작업경과는 다음과 같다.

그 동안 본 학술세미나 자료준비를 위하여 여러 차례 회의를 가졌으며 작업에 참여한 대표적 전문가 팀은 다음과 같다.

김 언 주 (충남대 교수·팀장)

김 명 환 (KIM연구소 소장)

- 육 근 철 (공주대 교수)
- 이 군 현 (과기원 교수)
- 이 상 천 (경남대 교수)
- 하 종 덕 (재능대학 교수)
- 함 철 훈 (가톨릭대 교수)

2. 위임사항의 개요

일반적으로 법령의 기본구조를 살펴보면 입법기관인 국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서명·공포함으로써 성립한 국법의 한 형식인 법률이 있다. 그러나 오늘날 행정이 전문화되고 비대해짐에 따라 모든 사항을 국회가 예측하여 법률로 정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설령 가능하다고 하여도 그 대신 법률의 내용은 방대해지기 때문에 이러한 입법은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전문기술적 판단을 요하거나, 사정의 변화에 따라 능동적으로 대처하여야 하거나, 정치적으로 중립적 입장에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항들에 대하여는 기본적인 목적, 요건, 내용 등만을 국회가 정하고 세부적 사항은 정부로 하여금 정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바, 여기에서 시행령에의 위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이러한 일반원칙에 따라 영재교육진흥법에서는 영재교육의 진흥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① 영재교육진흥위원회의 조직, 기능 등, ② 영재교육대상자의 선정 기준 등, ③ 영재교육기관의 설립 등, ④ 영재학급의 지정 등, ⑤ 이수인정 등, ⑥ 영재교육연구원의 조직 등에 관한 사항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다. 그러나 시행령에는 위임사항 뿐만 아니라, 영재교육진흥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도 동시에 규정할 수 있다.

<표 2> 영재교육진흥법시행령에의 위임내용

법 조 문	내 용	비 고	
제4조	제2항	영재교육진흥위원회의 조직, 기능 등	
	제2항	중앙위원회의 기능	
제5조	제3항	영재교육대상자의 선정기준 등	
제 9 조		영재교육기관의 설립 등	
제10조	제3항	특별사유	
	제4항	영재학급의 지정 등	
제11조	제2항	이수인정	
제12조	제1항	교원임용사항	
	제3항	연수사항	
제13조	제2항	도서 저작 등	
제15조	제3항	영재교육연구원의 조직 등	
기 타	영재교육종합계획	제3조제1항제1호	

3. 시행령 제정의 주요과제에 대한 방향(안)

1) 영재교육진흥위원회 문제(제4조 관련 사항)

(1) 중앙위원회

가. 분야 : 4개(과학, 체육, 예술, 인문사회)

나. 소속 : 유관정부부처

다. 각 중앙위원회별 위원수 : 7~15인

라. 위원 임명 및 위원장 선출 : 위원의 임명은 유관정부부처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

마. 기능 : 다음 사항 심의·의결

- 영재교육기관의 설립 및 폐지
- 영재교육기관의 교육과정 기준(academic standards)
- 영재교육기관의 영재선발기준
- 영재교육연구원의 설립 및 폐지
- 대학, 국공립연구소, 정부출연기관 부설 영재교육원의 설립 및 폐지

(2) 시도위원회

가. 기능 : 다음 사항 심의 · 의결

- 영재학교의 운영
- 영재학급의 운영
- 대학, 국공립연구소, 정부출연기관 부설 영재교육원 이외의 모든 영재교육원의 설립 및 폐지
- 영재학급 및 공익 법인 운영 영재교육원의 교원임용기준

2) 영재교육대상자의 선정 문제(제5조 관련 사항)

(1) 영재교육대상자의 선발

- 소속 유관정부부처의 중앙위원회의 영재선발 기준에 의거 영재교육 실시 기관의 영재심사 위원회
 - 예1) 대학부설 영재교육원의 경우 당해 대학의 영재심사위원회
 - 예2) 영재학교의 경우 당해 학교 영재심사위원회

3) 영재교육기관의 설립 운영(제9조 관련 사항)

(1) 국립영재학교

가. 분야 : 4개 정도(과학, 체육, 예술, 인문사회)

나. 개수 : 각 분야별로 전국 시도에 1개 정도

기존의 16개 과학고 경우에는 기존 학교를 과학분야의 영재학교로 지정하고, 교원 및 교육과정 등은 명실상부한 영재학교 여건을 마련해주어야 할 것임.

다. 대상 : 중·고학생

라. 학급당 인원 : 학급당 20명

마. 학급 수 : 학교 당 3~4학급정도

바. 타학교 전입학 : 입학후 부적격자는 일반 중·고 전학허용

사. 소속 : 유관정부부처(교육부, 과기부 등)

아. 대학과의 관계 : 유관명문대학과 긴밀한 연계(대학부설로 하는 방안도 검토 필요)

자. 교원 :

- 단기적으로는 현직교원 중 우수교원 선발하여 일정 시간의 영재교육 연수하는 방안, 또는 처음부터 대학원 영재교육 석사과정 이상 학위취득자로 하는 방안
- 처우는 교수급
- 교원인사는 기본적으로 초·중·고처럼 이동하지 않고 대학교원과 유사개념으로 운영
- 교원의 구체적 자격 및 연수는 (5)교원자격, 임용, 연수 항을 참조
- 차. 교육과정 : 중앙위원회의 교육과정기준에 의거 각 학교가 학칙에 자율성을 갖고 개발
- 카. 학년 : 기본적으로 무학년제, 학교내 영재심사위원회에서 학년 및 졸업 결정
- 타. 이수인정 : 학칙에 의거 학교내 영재심사위원회에서 인정
- 파. 교원대 학생비율 : 1:7 정도(해당분야 특정 교과는 1:5정도)

(2) 영재학급

- 가. 개념 : 시·도·군·구 교육청 또는 각급학교에서 영재학생을 위한 학급을 운영하는 것
- 나. 학생선발 : 시도교육청 시도위원회의 기준에 의거 교육실시 기관에서 선발
- 다. 이수인정 : 이수학점 인정여부는 시도교육청의 시도위원회에서 결정
- 라. 교원 : 초중등 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의 교원 중 시도위원회가 인정하는 교원

(3) 영재교육원

- 가. 개념 : 대학, 국공립연구소, 정부출연기관, 공익법인이 운영하는 영재교육기관
- 나. 학생선발 :
 - 대학, 국공립연구소, 정부출연기관은 자체 영재심사위원회
 - 공익법인은 선발 방법에 관한 사항을 시도교육청 산하의 시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침.
- 다. 이수인정 : 대학, 국공립연구소, 정부출연기관은 당해 교육기관의 영재심사위원회, 공익 법인은 시도교육청 시도위원회
- 라. 교원 :

- 대학, 국공립연구소, 정부출연기관에 의하여 설립된 영재교육원의 교원은 초·중등 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의 교원으로서 소속기관의 영재심사위원회 인정자
 - 공익법인의 경우, 초·중등 및 고등교육법상의 교원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시도교육청 시도위원회 인정자
- 마. 기존의 15개 과학영재교육센터와의 관계

기존의 과학재단(과기부) 지원 15개 과학영재교육센터를 과학분야(수학, 과학, 정보 3개를 말함) 영재교육원으로 전환하고, 과학분야 영재교육원은 시·도·군·구 교육청 또는 교육부 산하에 개설하지 않도록 해야함. 그리고 과학영재교육센터에서 고등학생까지 교육대상을 확대해야 함.

(4) 영재교육연구원

- 가. 설립형태 : 정부출연기관법을 개정하여, 영재교육연구회를 추가신설하고, 영재교육연구회 산하에 둠. 영재교육위원회 구성은 4개 정부부처 중앙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8인과 간사로 총리실 1인을 추가하여 총 9인으로 구성
- 나. 분야 : 과학, 예술, 체육, 인문사회 등 4개 분야
- 다. 소속 : 그 분야의 유관정부 부처소속으로 하고 유관분야의 명문대학과 긴밀한 연계가 가능하도록 함.
- 라. 기능 : ① 관련분야 영재에 관한 교육정책수립 ② 영재연구 ③ 영재교원연수
- 마. 기존관련기관과의 관계 : 노하우의 축적과 예산의 효율성을 피하기 위하여 기존 관련기관이 있는 경우(예를 들어 과학영재교육센터)에 이를 통합 확대 발전하는 것이 바람직

(5) 교원 자격, 임용, 연수

- 영재학급, 영재학교, 공익법인 운영 영재교육원의 교원

가. 교원자격

- 초·중등 교원자격증 소지자 중 교육부 인정 대학원에서 영재교육분야에서 석사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 초·중등 교원자격증 소지자 중 교육부 인정 대학(교)의 사범대학 및 교육대학원 부설 교원연수기관에서 소정의 영재교육과정 이수자 또는
- 석·박사학위 소지자로서 교육부 인정 기관에서 소정의 영재교육과정 이수자
- 단, 초중등 교원자격증 미소지자라 하더라도 특수한 분야의 교과목인 경우에는 별도 규정을 두어 그 특수성이 활성화되도록 하여야 함.

나. 교원의 임용

해당분야의 초·중등 교원자격증 소지자로서 중앙위원회 심의를 거쳐, 소속부처 장관

다. 교원연수

- 매5년마다 영재교육연구원 주관으로 정기 연수 실시
- 매7년마다 1년의 연구 안식년제 실시
- 대학, 정부출연기관, 국공립연구소 영재교육원의 교원
 - 영재교육에 전문성을 가진 자로서 자체기관 장이 인정한 자(자율성 부여)
 - 매5년마다 정기 연수 실시
 - 매7년마다 연구안식년제 실시
- 경과 조치 : 해당 분야의 교원의 자격이 되는 자가 없을 때에는 각 영재교육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기간 영재교육교원의 자격에 준하는 자를 들 수 있다.

(6)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제3조 1항 관련 사항)

각 정부부처의 중앙위원회는 매5년마다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을 수립 해당 정부부처 장관에게 보고

4) 이수인정과 AP과정

모든 영재교육기관의 학점 이수인정 관계는 공통적으로 초중고를 졸업하는데 필요한 것에 한정되며 영재교육기관에서 이수한 것이 대학 졸업하는데 사용이 허가되려면 II장에서 언급한 AP과정이 영재교육기관(특히 영재학교)에 개설되어 실행되어야 할 것임.